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22

인 천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6가단225611 부당이득금

원 고 A

피 고 [redacted]광역시

변 론 종 결 2016. 12. 14.

판 결 선 고 2017. 1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3,944,550원 및 이에 대한 2014. 9. 4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4. 9. 4. [redacted]구 B아파트 제601동 제131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22

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에게 취득세 29,517,000원, 지방교육세 2,951,700원, 농어촌특별세 1,475,850원, 합계 33,944,550원(이하 '이 사건 취득세 등'이라 한다)을 납부하였으나,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. 10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. 10. 17. 접수 제100646호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위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정의·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위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3,944,5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 단

가.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,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)

나. 원고는 사정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고만 주장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22

하고,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, 피고는 원고가 2014. 9. 4.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자진하여 납부할 때 그 신고·납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, 원고는 납부한 후 한 달 남짓 지난 2014. 10. 17. 제3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, 지방세법 제51조 제2항 3호,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정한 "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"에 해당할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한데도, 이러한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다가 제3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8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, 원고가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·납부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,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재욱